

地 域 交 通 課

목 차

□ 교통유발부담금과징

□ 불법주정차단속

□ 주차장확충

□ 무단방치차량처리

□ 교통불편신고센터운영

1. '92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

□ 법적근거
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1조의 4 동법시행령 제 9조의 5

— 신설 '90. 9. 15 공포 —

□ 추진사항

- 부담금의 부과기준

- 시설물의 바닥면적 각층합계 1,000㎡ (300평)이상의 시설물
- 시설물의 바닥면적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
- 단위부담금은 바닥면적 3.3㎡ (1평) 당 1,000원
- 제외대상 — 주거용건축물, 주차장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종교시설등

- 부과기준일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|
| [| 매년 8월 1일 기준 |] | 년 1회 |
| | 납기 : 9. 16 - 9. 30 | | |

- '92 정기분 부과현황

부과 및 징수

- 부과건수 : 956 건
- 부과액 : 176,000,130원

- 납기일이 9. 30이 되므로 현재는 징수실적이 없으며, 은행창구 취합후 10. 10경 실적이 나오게 됨.

2. 불법주정차 단속

□ 법적근거

- 도로교통법 제 28조 내지 제 30조 동법시행령 제 11조

□ 목표

- 불법 주정차 지속적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
-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로 교통소통 원활등 쾌적한 거리조성

□ 주정차단속 로선

- 금지구역 36개소 40,477KM

□ 세부추진계획및 실적

- 견인차 4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위반차량 계속견인
- 단속반 8명 (2인1조)의 순찰구역을 도로별 또는, 블록별로 명확히 구획하여 책임단속 확행
 - 주기적으로 순환배치
- 취약지역 단속을 위한 별도 근무조 편성 — 예시장주변
- 불법 주차 우심지역에는 견인차량 배치, 불법주차 사전예방

□ 단속실적

- 과태료부과 (스티카)

'92. 1월 - 8월말까지

| 부 과 | | 징 수 | | 체 납 |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건 수 | 금 액 | 건 수 | 금 액 | 건 수 | 금 액 | |
| 6,785 | 천원 209,650 | 2,598 | 천원 84,590 (40.4%) | 4,187 | 천원 124,970 (59.6%) | |

○ 주정차 건인실적

(단위 : 천원)

| 건인 실적 | 건인료 수입 | | 과태료 수입 |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| | 부과 | | 징수 | | 미징수 | |
|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
| 5,733 | 5,733 | 115,190 | 5,733 | 173,370 | 5,278 | 159,720 | 455 | 13,650 (7.9%) |

□ 기대효과

- 교통소통 원활과 운전자의 법질서 의식함양
-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문화의 조기 정착

3. 주차장 확충

현 황

| 계 | | 노 상 | | 노 외 | | 부 설 | |
|-----|--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--|
| 개 소 | 면 수 | 개 소 | 면 수 | 개 소 | 면 수 | 개 소 | 면 수 |
| 416 | 11,784 | 49 | 1,914 | 86 | 1,908 | 281 | 7,962 |

※ 노상주차장 { 유료 : 8개소 639면
 무 료 : 41개소 1,275면

추진실적

○ 노상주차장 확충

- 광천터미널 앞 광로상 130면
- 아시아 자동차 뒷도로 33면

금 후추진계획

- 양 3동 발산광장, 봉선동 라인하이츠 아파트와 모아 1차 아파트 사이도로, 염주체육관 → 현대아파트 담장옆도로등 검토후 노상 주차장 시설

기대효과

-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 주차공간 확충으로 교통질서 정착

4. 무단 방치차량 처리

법적근거

- 자동차 관리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

목 표

- 주택가 및 도로상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처리
- 도시미관저해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
- 처리명령시 반송이 빈번하여 소유자 책임의식 결여

세부추진계획실적

- 노상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설치 운영
 - 설치기간 : '92. 3. 1 - '94. 2. 28.
 - 설치장소 : 쌍촌동 267-4
 - 설치규모 : 152평 40대보관가능
 - 임차금액 :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40만원

처 리 절 차

- 각동에서 관내 순찰시 발견 사실 통지서 발부후 미처리 차량보고
- 즉시 임시보관소로 이동조치
- 처리명령과 동시 강제처리 공고
- 강제 폐차처리- 폐차장 이동

처 리 실 적

'92. 8. 30현재

| 총 발생건수 | 강 제 처 리 | 소유자 자 진 처 리 | 비 고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
| 159 | 116 | 43 | |

5.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

□ 배 경

- 교통불편 사항을 조기에 발견 신고하여 교통소통 저해요인을 신속하게 처리하여
- 시민의 행정참여 확대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코자함.

□ 추진 방법

- 관내 거주 주민으로 교통불편 신고요원 위촉, 신고제 운영
- 교통시설물의 파손 및 고장신고
- 교통체계 개선사항 정보신고
- 교통사고 및 통행 지장물 신고
- 접수사항 신속처리와 도출된 교통개선점 분석반영

□ 추진 사항

- 교통신고원 위촉 — 150명
 - ┌ 고정신고원 — 교통신호등 인근주민 (39명)
 - └ 이동신고원 — 모범운전자, 개인택시, 운수업체 (111명)
-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
 - 9. 10 현재 접수건수 — 86건
 - 처리건수 — 86건

- 신호등 고장신고 — 75 건
- 신호등 신설요구 — 3 건
- 횡단보도 위치변경 — 2 건
- 방치 차량 신고 — 6 건

□ 문제점

- 교통시설물의 관리운영은 전남경찰청에서 관장하는 업무이므로 민원 발생시 경찰청에 협조 요청후 처리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있음.

□ 대책

- 도로교통법 제 3조 (신호기등의 설치 및 관리) 및 제 10조 (도로의 횡단)의 지방경찰청장의 관장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개정하여 신속하게 민원사항을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함.